

대전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1258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가 2021. 8.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1. 8. 3. 접수 제337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충주세무서, 충북신용보증재단, C조합, 주식회사 D, 국민건강보험 충주시사, 충주시청, 대법원, 부천세무서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B이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즉, B의 증여행위 당시에는 원고의 대위변제를 통한 구상금 채권이 완전하게 성립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계속적인 영업악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함으로서 채권자들을 해하여 채권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는 피고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기에, 피고 항변의 당부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과 피고가 2021. 8. 3. 맺은 증여계약은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원물반환)으로서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1. 8. 3. 접수 제337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써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신용보증약정상 채권자입니다.
- 나. B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신용보증의뢰인입니다.
- 다. 피고 A는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B으로부터 중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입니다.

2.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 청구

-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 (1) 원고는 B과 2020. 11. 4. 신용보증원금 19,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5. 11.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2) 그리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나. 신용보증서 발행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20. 11. 4. 업무수탁기관인 소외 F은행 음성지점(이하, F은행이라 합니다)에 보증금액 19,000,000원, 보증기한 2025. 11. 4., 대출과목 소상공인대출, 보증비율 95%, 보증번호 G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

- (1) B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2020. 11. 4. F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을 통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22. 2. 5.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F은행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022. 5. 27. 19,273,263원(원금 19,000,000원 + 이자 273,263원)을 대변제하였습니다.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588,890원을 상계하여 현재 대위변제잔액금으로 18,684,373원이 남아 있습니다.
- (2)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잔액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부대비용

- (1) 확정손해금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일부금을 상환받음으로써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확정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확정손해금으로 1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2) 대지급금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B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으로 230,66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 원고 소정의 연체 이자율

원고 소정의 연체 이자율은 대위변제일인 2022. 5. 27.부터 현재까지 연 8%입니다.

바. 소 결

따라서, B은 원고에게 18,915,169원(대위변제잔액금 18,684,373원 + 확정손해금 129원 + 대지급금 230,667원) 및 그중 대위변제잔액금 18,684,37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청구

가. 피보전권리요지

원고는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에 기하여 B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그에 따른 확정손해금, 대지급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B은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의뢰인으로서, 지금까지 재산을 조사하여 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모친인 피고 A와 2021. 8. 3. 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충주시 H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I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J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49.4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충청북도 충주시 H 대 24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44분의 40.6 꺾.

